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상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82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이상욱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길영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태수,
서상열, 유정희, 이종태,
이희원, 최민규, 허·훈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서울시 내 대형 공연장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, 대중문화 콘텐츠의 국내외 공연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. 특히, 기존 대형 공연장들이 개보수 또는 타 용도 활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수만 명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서울 시내에 전무한 실정임.
- 이로 인해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한국 공연 무산, 국내 대형 기획 공연의 해외 이전, 암표 거래 및 티켓 가격 상승 등 다양한 문화·경제적 문제가 파생되고 있으며,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 역시 심화되고 있음.
- 현행 조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의 건축을 허용하되, 바닥면적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$2,000\text{m}^2$,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$3,000\text{m}^2$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공연장 설치가 어려운 구조임.
-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연장의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, 도시 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며, K-콘텐츠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의 설치가 가능한 최대 바닥면적을 기존 2천제곱미터에서 4천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고,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완화할 수 있음(안 별표 5 개정).
- 나.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의 설치가 가능한 최대 바닥면적을 기존 3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고,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완화할 수 있음(안 별표 6 개정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계획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와 별표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5 제3호나목1) 전단 중 “2천제곱미터”를 “4천제곱미터”로 하고, 후단 중 “다만,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”를 “다만,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및 주변의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구역이거나,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별표 6 제2호가목 전단 중 “3천제곱미터”를 “5천제곱미터”로 하고, 후단 중 “다만,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다만,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및 주변의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구역이거나,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건축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문화 및 접회사설 중 공연장의 설치가 가능한 최대 연면적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,
- 조례 제33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)의 별표 5의 내용을 수정(2천제곱미터 → 4천제곱미터)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연장 설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였고 별표 6의 내용을 수정(3천제곱미터 → 5천제곱미터)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연장 설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김진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